소통하는 의정

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,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
- 다.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국가기술기본법」제4조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천연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시책 수립·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.
- 안 제5조는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위원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0. 4. 6.~'20. 4. 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천연물산업 시장이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, 천연물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